

호흡재활 보험급여

2017. 2.4.

HIRA  건강보험심사평가원
HEALTH INSURANCE REVIEW & ASSESSMENT SERVICE
급여등재실 의료행위등재부





CONTENTS

01 만성호흡부전 재활치료

02 휴대용 산소 발생기

호흡 재활 치료

❖ 만성폐성폐질환(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 COPD)

- COPD 입원률(인구 10만 명 당): 한국 212.1명, OECD 평균 198.4명
* Health at a Glance 2015(OECD, 2015)
- COPD 유병률: 40세 이상(14.2%), 65세 이상(31.1%)
* 통계청 「2014 국민건강통계」,
폐기능검사 결과 기류제한($FEV_1/FVC < 0.7$)이 있는 분율
- 한국인 주요 10대 만성질환 질병부담 순위 5위
* 주요 상병질환의 경제적 부담 측정을 위한 계획수립
및 방법론 정립을 위한 연구(2009)

❖ 호흡재활 지침서 2015

호흡재활치료 관련 수가현황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상대가치점수]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점수
사-129	MM290	호흡 재활치료[1일당] Rehabilitative Breathing Therapy 주: 유발성흡기폐활량계 등 기구를 사용한 호흡운동, 체위배액치료 등 호흡재활치료를 30분 이상 실시한 경 우	82.32
사-36	MM360	간헐적호흡치료(양압호흡 또는 음압호흡)[1일당] Intermittent(Positive or Negative) Pressure Breathing Treatment	527.63
사-40	MM400	양위 양압호흡치료[1일당] BIPAP Treatment	1,202.65
사-43	MM430	고빈도흉벽진동요법[1일당] High Frequency Chest Wall Oscillation	47.43

호흡재활치료 관련 기준 및 심의사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제2000-73호, 2000.12.30)

제목	고시내용
Vibrator (호흡자극기)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2 입원료 소정점수에 포함함
체액배액, 흉부운동, 체위배액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진료료(입원료) 소정점수에 포함. 다만, 제7장 제3절 주.1에 따라 호흡재활치료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129 호흡재활치료로 산정함
단순체외배액운동, 복잡체외배액운동, 호흡운동, 흉곽팽창운동, 호흡생체되먹이기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발성 흡기폐활량계 등 기구를 사용한 호흡운동, 체위배액치료 등 호흡재활치료를 30분 이상 실시한 경우에는 사129 호흡재활치료의 소정점수를 산정함

호흡재활치료 관련 기준 및 심의사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제2000-73호, 2000.12.30)

제목	고시내용
폐내진동환기법의 준용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각종 수술이나 폐질환 환자에게 폐합병증의 예방과 치료를 위하여 실시하는 폐내진동환기법(Intrapulmonary Percussive Ventilation, IPV)은 일회 호흡량 이하의 작은 호흡량(Subtidal vol. 혹은 Stroke vol.)을 분당 200회 이상 고빈도 호흡시키는 장치이며, Nebulizer에 기관지확장제를 넣어 Aerosol형태로 분무시키며 가슴을 하고, 지속적인 폐내진동에 의해 폐내가스 혼합과 교환을 함으로써 폐내분비물을 제거해 주는 흉부 물리요법의 한 방법으로• 사36 간헐적호흡치료(양압호흡 또는 음압호흡)에 준용 산정하며, 인공호흡과 병용하여 실시한 경우에는 폐내진동환기법과 인공호흡을 실시한 시간을 합산하여 자585 인공호흡의 해당 항목으로 산정함

만성호흡부전 재활치료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점수
사-44		만성호흡부전 재활치료	
	MM440	가. 폐질환 운동재활치료[1일당] Rehabilitation Exercise for Pulmonary Disease	468.23
	MM441	나. 호흡근부전 재활치료[1일당] Pulmonary Rehabilitation for Respiratory Muscle Dysfunction	607.95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79호, 271호(2016.12.1. 시행)

만성호흡부전 재활치료 가. 폐질환 운동재활치료

[행위정의]

구분	정의 및 적응증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호흡부전 증상 완화, 삶의 질과 운동능력의 향상, • 일상생활에서 신체적·정서적 활동 확대를 통해 건강증진 상태 유지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성폐쇄성폐질환, 천식, 기관지 확장증 • 간질성 폐질환, 결핵성 폐질환, 폐동맥 고혈압 • 폐암 수술 전·후, 폐 이식 수술 전·후, 폐 용적 감소 수술 전·후, 흉부 및 복부 수술 전·후 • 척추 측만증·후만증을 포함하여 제한성 폐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흉곽의 병변 <p>☞ 위 대상에 해당하는 환자 군에서 호흡곤란 등의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p>

만성호흡부전 재활치료 가. 폐질환 운동재활치료

실시방법

- 환자의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의사가 환자의 운동능력과 호흡곤란 정도, 기저질환 및 동반질환을 고려하여 개인별 맞춤 운동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처방하고 치료를 시행함
- 유산소 운동 : 최대운동능력의 60% 이상의 강도로 20~60분의 운동을 주 3~5회 시행
고강도 운동이 불가능한 환자에서는 저강도 운동을 시행
- 근력 운동 : 최대 근력의 60~70%의 강도로 1세트 10회 이상, 세트 2~3회 시행

만성호흡부전 재활치료 가. 폐질환 운동재활치료

[실시방법]

[프로그램 구성]

준비	5~10분 간의 저강도 또는 중강도의 활동
스트레칭	준비 운동 후 10분간 시행
본운동	환자의 운동능력에 맞추어 20~30분 간의 유산소 운동(Ergometer나 treadmill 사용), 환자의 최대 근력의 60~80% 수준의 근력운동(근육별 1세트 10~15회, 세트 2~3회 시행), 유연성 훈련(상·하지 스트레칭) 등으로 구성
정리	5~10분 간 저강도 또는 중강도의 심혈관 및 근지구력 운동 * 저강도(<40% 최대산소섭취량), 중강도(40~60% 최대산소섭취량)

만성호흡부전 재활치료 가. 폐질환 운동재활치료

소요인력 등

<소요인력>

의사, 물리치료사, 간호사

<소요시간>

60분

<소요장비/재료>

경피적 산소포화도 측정기, treadmill, bicycle ergometer, 상지 bicycle erometer, theraband set, dumbell set, 이동식 산소 또는 벽 산소, 도수 소생기 백

만성호흡부전 재활치료 나. 호흡근부전 재활치료

[행위정의]

구분	정의 및 적응증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호흡근육의 기능장애로 인한 제한성 폐질환 환자들 중 중증 호흡부전으로 인해 장기적으로 자가 인공호흡기를 적용 중인 환자를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환기상태에 대한 평가 후 자가 인공호흡기 세팅 및 사용방법을 재조정하고 환자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자가 인공호흡기 사용방법 및 관리에 대한 교육을 시행하여 부적절한 사용으로 인한 호흡부전 악화와 그에 동반되는 합병증을 예방하여 장기간 안정적으로 인공호흡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경근육계 질환 척수손상 환자 흉곽변형에 의한 호흡부전 환자(kyphoscoliosis, kyphosis, scoliosis 등) <p>☞ 위 대상에 해당하는 환자 군에서 호흡곤란 등의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p>

만성호흡부전 재활치료 나. 호흡근부전 재활치료

[실시방법]

비침습적 인공호흡기 재조정을 위한 호흡재활치료

1. 환자의 산소포화도 및 이산화탄소분압이나 생체징후 등이 적절히 감시될 수 있는 위치와 자세를 취함
2. 호흡기 세팅(압력 혹은 용적 방식, 호흡수, 일호흡용적, 흡기 및 호기시간 비율 등)을 다양하게 조절하여
산소포화도와 이산화탄소분압이 정상인 상태로 적절히 세팅
3. 마스크를 포함한 다양한 인터페이스(비강마스크, 구비강마스크, 마우스피스 등)를 환자에게 적용하고 환자의 순응도가 가장 좋은 방법을 선택
4. 환기상태검사 상 정상범주가 확인된 호흡기 세팅에서 수면동안 정상범주를 유지하는지 확인
5. 수면 중 환기상태 검사 상 정상 범주임이 확인되면 호흡기 적용없이 이탈시간을 확인하여 호흡기 사용시간을 결정
6. 환자 및 보호자 교육 : 인공호흡기 적용시간, 적용방법, 세팅 재조정 내용 설명, 알람 경고 시 확인사항 및 대처법, 인터페이스 및 서킷 관리 등을 교육하여 환자와 보호자가 자가로 인공호흡기를 관리할 수 있도록 교육

만성호흡부전 재활치료 나. 호흡근부전 재활치료

[실시방법]

침습적 인공호흡기 사용자의 비침습적 전환을 위한 호흡재활치료

1. 환자와 보호자에게 비침습적 전환을 위한 기관절개관 막는 연습과 마스크 적용 훈련 방법 및 절차 설명
2. 환자의 산소포화도와 생체징후 등이 적절히 감시될 수 있는 위치와 자세를 취하도록 함
3. 비침습적 전환을 위해 비구강을 통한 환기가 가능한 구멍이 있는 기도절개관으로 변경
4. 산소 및 이산화탄소 모니터링을 확인하면서
기도절개관의 인공호흡기 서킷 연결부를 막고 인공호흡기는 마스크 등의 비침습적 방법 적용
5. 호흡기 세팅(압력 혹은 용적 방식, 호흡수, 일호흡용적, 흡기 및 호기시간 비율 등)을 다양하게 조절하여 산소포화도와 이산화탄소분압이 정상인 상태로 세팅하고 환자 순응도가 가장 좋은 인터페이스 선택
6. 환기상태검사 상 정상범주가 확인되는 호흡기 세팅 확인 및 적용하고 수면동안의 정상범주 유지 확인
7. 수면 중 환기상태 검사 상 호흡기 적용없이 정상 범주를 유지하는 시간을 확인하여 호흡기 사용시간 결정
8. 보조 기침방법으로 구강 분비물 제거 가능 시 기도절개관을 봉인·비침습적 방법으로 인공호흡기 유지
9. 인공호흡기 적용시간, 적용방법, 세팅 재조정 내용, 알람 경고 시 확인 사항 및 대처법, 인터페이스 및 서킷 관리, 구강을 통한 분비물 제거 등 자가 인공호흡기 관리를 위한 환자와 보호자 교육

만성호흡부전 재활치료 나. 호흡근부전 재활치료

[실시방법]

침습적 인공호흡기 사용자의 자가 호흡기 세팅 점검 및 조절

1. 환자의 산소포화도와 생체징후 등이 적절히 감시될 수 있는 위치와 자세를 취하도록 함
2. 기도절개관의 풍선이 적당한 압력으로 부풀어져 있는지 확인
3. 호흡기 세팅(압력 혹은 용적 방식, 호흡수, 일호흡용적, 흡기 및 호기시간 비율 등)을 다양하게 조절하여 산소포화도와 이산화탄소분압이 정상이 되는 상태로 적절히 세팅
4. 이학적 검사 및 병력에 따라 흡인의 위험이 낮고 발성이 가능한 환자에서는 담당의의 판단 하에 기도절개관의 풍선을 감압 후 환기상태를 확인하면서 호흡기 세팅 재조정 및 환자와 보호자에게 설명
5. 환기상태검사 상 정상범주임을 확인하고 그 호흡기 세팅에서 수면동안 적용
6. 수면 중 환기상태 검사 상 정상 범주임을 확인 후 호흡기 적용 없이 이탈시간을 확인
7. 인공호흡기 적용시간, 적용방법, 세팅 재조정 내용, 알람 경고 시 확인사항 및 대처법, 서킷 및 기도절개관 관리 등을 교육하여 환자와 보호자가 인공호흡기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함

만성호흡부전 재활치료 나. 호흡근부전 재활치료

소요인력 등

<소요인력>

의사, 간호사

<소요시간>

90분

<소요장비/재료>

10cc 주사기, 도수소생기 백, 인터페이스(비강마스크, 구비강마스크, 마우스피스 등)

만성호흡부전 재활치료 가. 폐질환 운동재활치료

요양급여비용 청구내역_사례

- 00세/ 남
- '16.12월 3회/1주 외래진료
- 상병명: 만성 호흡부전, 보행 및 이동의 기타 및 상세불명 이상
- 이학요법료: 만성호흡부전 재활치료-폐질환 운동재활치료 3회/ 1주

* 12월 이전 청구내역

- (동일기관) 3회/1주 외래진료, 재진-물리치료, 주사 등을 시술받은 경우
- (타 기관) 폐이식 후 외래 방문

휴대용 산소발생기 대여료 급여적용

요양비(휴대용 산소발생기 대여료 지원)

개요	호흡기 장애인 등이 산소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휴대용 산소발생기 임대비용을 건강보험 요양비에서 지원
급여대상	호흡기 장애인 1급, 2급 및 기타 지급대상* * 중증의 만성심폐질환 등으로 산소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중 적절한 내과적 치료(90일간) 후 별도 검사 기준에 부합한 경우 ** 현행 가정산소치료서비스의 요양비 급여대상·기준과 동일
급여품목	휴대용 산소발생기 대여료: 산소를 직접 발생시키는 산소통으로서, 등록기준*에 해당하는 장비를 공단에 등록된 업소로부터 임차한 경우 지원 • 산소농도 90%이상, 소음 60dB이하, 기능이상(산소농도 또는 유량, 전원중단, 배터리 잔량 등)에 대한 경보기능이 있어야 함
기준금액	20만원(월 기준, 기준원가, 소모품비 및 유지·보수를 위한 재료비 등 제반비용 포함) 기준금액 또는 실대여가 중 낮은 금액의 90%(차상위 100%) 지원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258호(2017.1.1. 시행)

기침유발기 대여료 급여적용

요양비(기침유발기 대여료 지원)

<p>개요</p>	<p>인공호흡기 사용하는 사람 중 기침유발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기침유발기기 임대비용을 건강보험 요양비에서 지원</p>
<p>급여대상</p>	<p>희귀난치성 질환 및 만성호흡부전이 동반되는 중추신경계 질환의 상병으로 인공호흡기를 사용하는 사람 중 스스로 기도분비물 배출이 어려워 기침유발기가 필요하다고 진단받은 자</p> <p>* (현재) 11개 희귀난치성 질환 -> (변경) 28개 희귀난치성 및 중추신경계질환</p>
<p>급여품목</p>	<p>기침유발기 대여료</p> <p>- 기침과 같은 역할을 하는 강력한 호기력을 발생시켜, 기침을 유발시키는 기기로서 등록된 업체로부터 장비를 임차한 경우 지원</p>
<p>기준금액</p>	<p>16만원(월 기준, 기준원가, 소모품비 비용 포함)</p> <p>기준금액 또는 실대여가 중 낮은 금액의 90%(차상위 100%) 지원</p>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258호(2017.1.1. 시행)

앞으로도 전 임직원은
건강하고 안전한 의료문화를 열어가는
국민의료평가기관이 되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